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2022.
12.14.수
09:30~12:00
국회의원회관 제 11간담회의실

| 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정복,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병욱** | 주관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2022.
12.14.수
09:30~12:00
국회의원회관 제 11간담회의실

| 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정복,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병욱** | 주관 **경기도교육청**

목차

주요 내·외빈 참석자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개 회 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 정 복	교육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 병 욱	교육위
축 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교육위원장	유 기 홍	교육위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임 태 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간사	김 영 호	교육위
	국민의힘	국회의원 / 간사	이 태 규	교육위
토론좌장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	한 유 경	
사 회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손 정 락	
발 제	경기도교육청	과장(장학관)	박 정 행	
	경인교대	교수	박 주 형	
토 론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과장(서기관)	이 지 은	
	유스메이트	대표	김 승 혜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주무관	정 재 욱	
	법무법인 지온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심의위원)	변호사	장 권 수	
	광명초등학교	교사	박 현 진	

토론회 일정

구 분	소요시간(min)	주요내용	발표자 및 토론자
준 비	30	출입 및 등록	
발 제	학교폭력 현황 및 교육적 해결의 필요성		
	15	경기교육청 맞춤형 현장지원체계 현황	박정행 (경기도교육청 과장)
	15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필요성과 방안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
휴 식	10	휴식 및 장내정리	
2부 (토론)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		
	60	토론 및 질의응답 (토론패널)	좌장:한유경
	5	폐회	사회자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국회의원 문정복입니다.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토론회 개최에 큰 힘이 되어주신 의원님들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좌장을 수락해주신 한유경 소장님(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사회를 맡으실 손정락 장학관님(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그리고 발제자 박주형 교수님(경인교대)과 박정행 교육과장님(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및 패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의 학교폭력 문제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양상도 점차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학생들의 등교가 줄면서 학교폭력도 이에 따라 감소한다는 예상과는 달리, 폭력의 형태 또한 사이버상으로 전이되어 더욱 교묘하게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인성교육과 사회적교육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학교가 반드시 학생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다는 믿음도 주어야 합니다.

기존 학교폭력 대책의 문제점을 바라보면, 사전예방 측면보다는 사후관리식 행정으로 처리되어왔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대한 구체적, 지속적인 교육이 아닌 실효성 없는 형식적 관리와 교육은 더욱 청소년들을 극한 상황으로 내몰 것입니다.

학교 실정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수립 및 교육 개편, 실질적 공조시스템 구축, 교원 전문성 확립 등 지속가능한 교육체계로의 전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불어 '폭력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계를 포함한 모든 사회 주체들이 공통의식을 갖고 유기적 협력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 모든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우리 사회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소중한 인재입니다. 오늘 자리에서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우리 교육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현장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깊은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더 이상 학교폭력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상처받지 않고 평화로운 학교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님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님,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줍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독일 대학의 의미 있는 연구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인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매우 귀하고 시의적절합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학교폭력 문제를 '치유와 성장'의 관점에서 풀어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학교폭력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관계를 회복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토론회에서 치유와 성장, 관계 회복의 관점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논의되는 내용을 경청하고 수렴하여 정책적 지원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님과 박정행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좌장이신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님과 사회를 맡아주신 손정락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장학관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자이신 이지은 교육부 생활문화과장님, 김승혜 유스메이트 대표님, 정재욱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주무관님, 장권수 변호사님, 박현진 선생님께도 감사드리며,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고대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교육감 임태희입니다.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히 학교폭력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신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 관련 지침들이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에 기여해 온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고통과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심적 부담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한 피해학생, 가해학생은 모두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야 할 우리 아이들입니다. 가해학생이 자기 행위에 대한 반성과 책임 이행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피해학생이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해결 방안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치유와 성장에 중심을 둔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운영, 경기형 관계회복 프로그램 워크북 제작•보급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학교와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 발생 시 절차와 규정에 따른 사안처리를 강조하고 있을 뿐 교육적 해결을 위한 절차와 지원 방안은 미흡합니다.

이번 '학교폭력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임 태 희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장 유기홍입니다.



먼저 오늘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토론회를 주최하신 문정복 의원님과 김병욱 의원님, 경기도교육청,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고 있는 학교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학교 폭력으로 인한 학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은 시대가 갈수록 심각해지며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296건이던 학교 폭력 심의 건수가 올해는 446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학교 내 갈등이 심각한데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도입된 학교전담경찰관(SPO) 정원은 줄었고,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가해 학생 측에서도 처분 감경을 목적으로 '맞학폭'을 제기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회와 교육부에서는 학교 폭력에 관한 대책을 꾸준히 추진했으나 학교 폭력 근절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가장 근본적인 대책인 학생들의 배려·공감·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 방안이 미흡하여 학교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받았습니다.

이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한 조치보다는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교육적 해결 강화를 통해 학교 폭력의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하며, 저 또한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유 기 홍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영호 의원입니다.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개최를 위해 수고해주신 문정복의원님과 김병욱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스마트폰과 SNS를 중심으로 더욱 교묘하게 진화하며 사이버 범죄 유형 또한 다양해졌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을 넘어 일상 곳곳에 스며드는 괴롭힘을 막기 위해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 간 관계회복이나 교육적 해결보다는 문제 학생에 대한 처벌 위주로 시행되고 있어 되레 학교를 갈등의 장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재발 방지라는 본질적 목표보다 불신과 소송을 유발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로펌까지 생겨나는 등 법과 현실의 괴리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차가운 법과 절차가 아닌 따뜻한 지도와 화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막 학교라는 공간에 적응하기 시작한 초등학교 저학년과 성숙한 고등학생이 일률적인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받아 처벌 수위마저 동일하게 시행되는 것은 다소 위험한 정책입니다. 어린 학생들의 행위를 어른들의 눈으로 처벌하는 대신 초·중·고교 각각의 현장과 감수성에 발맞춰 더욱 예민하고 민첩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학교폭력예방법을 바라보는 데 있어 학생간 관계회복에 의의를 둔 교육적 해결을 강화하기 위한 의견을 나누고, 책임과 해결의 의무를 촘촘하게 다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 또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로서 청소년들이 더 밝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자리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김 영 호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정복, 김병욱 의원님께서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교육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정치권이 뜻을 모아 좋은 대안 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부분등교 등으로 감소했던 학교폭력이 최근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폭력은 신체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금품갈취,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하는 학생에게 학교는 머물고 싶은 공간이 아니라 한시도 있기 싫은 지옥 같은 공간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도를 넘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선량한 타인에게 불이익이나 피해를 주면 자기 자신도 불이익과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이 점점 저연령화, 은밀화,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과 함께 교육적 차원의 사후 조치가 중요합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과 별개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의 화해 문제가 중요합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의 관계 회복은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 회복을 통해 피해 학생은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나고, 가해 학생은 마음의 빚으로부터 벗어난다면 정상적 학교생활로 복귀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질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화해와 치유'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화해·관계 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 정책 모색을 통해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소통토론회를 개최하신 바 있는데, 학교폭력 해결 방향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피해 학생의 상처 회복은 물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관계 회복까지 이뤄질 수 있는 학교폭력 해결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합니다. 제재와 처벌이 아닌 화해와 치유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가 완화된다면 우리 교육은 물론 사회 전체가 통합과 미래로 진일보할 수 한다고 믿습니다. 저도 국회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의원 이 태 규

발제문 I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현장 지원 체계 및 교육적 해결 정책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정행

1.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2019.8.)

- 2019년 8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은 학교폭력 발생 사안에 대한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처리 방식과 대응에 있어서 대전환을 맞음. 단위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던 것에서 2020년 3월 1일부터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바뀜.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의 사안처리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이전 자치위원회에 비해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여 학교폭력 심의와 관련된 불만과 민원을 감소시키고, 대신 학교는 교육적 활동에 전념하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생활지도와 관계회복 노력을 통해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하여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조성 지원을 목적으로 함

- 한편, 교육지원청으로의 심의 이관 6개월 전(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비교적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 학교가 교육적 관여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없이도 학생 간의 바람직한 관계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학교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기반을 마련함

2. 학교폭력 현황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 최근 학교폭력 발생 현황

학년도	심의 건수	학교장 자체해결		비고
		건수	비율	
2017	7,329			
2018	7,833			
2019	8,644	3,386	28.1%	2019년 9월부터 학교장지체해결제 시행
2020	1,734	3,262	65.3%	
2021	3,456	6,219	64.3%	
2022(3월-8월)	2,673	4,882	64.6%	

-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감소했던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등교 수업이 본격화된 2021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에 있음. 2019년 9월부터 시행된 학교장자체해결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2020년과 2021년의 학교폭력 학교장자체해결 비율은 65% 내외로 유사함. 전체 학교폭력 신고 사안의 약 2/3는 학교장자체해결로 종결되고 있음

-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22년 들어 더욱 증가해 8월까지 2,673건으로 2021년 동기간 대비 69% 증가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의 긍정적 측면

- 학교의 업무 부담 경감: 학교에서는 사안 접수와 사안 조사, 전담기구 심의까지만 이루어지고 가장 민감한 심의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학교폭력 관련 업무량과 업무 부담이 크게 감소하면서 교육활동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됨

-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가 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지면서 학교가 사안을 축소•은폐한다는 민원과 조치 결정의 적절성에 대한 민원이 감소하여 학교에서는 교육적인 지도를 통한 해결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됨

- 심의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확보를 통한 사안처리의 신뢰도 제고: 전문성있는 심의위원을 위촉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의 절차적 하자를 최소화할 수 있음. 또한, 관할 지역 내 사안에 대해 비교적 일관된 조치 결정을 할 수 있어 학교폭력 심의 전반에 대한 신뢰도 확보 가능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의 한계와 부정적 측면

- 심의까지 소요 기간 증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관할 지역 내 모든 사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다보니 사안 접수 후 심의 개최까지 5~7주 정도 소요되며, 최근 사안 발생 증가로 정해진 기한을 넘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학교폭력 심의 개최 지연은 피해학생 보호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는 문제가 있음

- 교육적 해결에 소극적 경향: 학교는 사안 접수와 사안 조사 후 교육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 하겠지만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희망하는 경우 교육지원청에 심의 개최 요청하면 끝이라는 인식을 가지기 쉽고, 중립을 지켜야 하는 부담감과 교육적 해결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교육적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음

- 심의 결과에 대한 불복: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전문성있는 심의를 위해 노력하지만,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대한 피•가해학생 측의 불만은 줄어들지 않으며,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이 준사법적 판결과 같다는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변호사 선임을 통한 대응과 행정심판, 행정 소송 등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3.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필요성

◯ 학교폭력 현황 및 학생지원센터 모니터링 결과 분석

- 2021, 2022년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학생지원센터 현장 방문 모니터링 결과, 사소한 갈등과 다툼 등 경미한 사안까지도 심의 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학생지원센터 업무 담당자가 심의 업무에 매몰되어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비롯한 학교 현장 지원 여력이 없음

- 학생 간의 사소한 갈등과 다툼이 보호자 간의 갈등으로 심화되어 학교장자체해결 가능한 경미한 사안임에도 학부모 미동의에 의해 심의개최 요청되고 있으며, 2022년의 경우 전체 심의 건수 중 약 46% 사안이 이에 해당함

- 특히, 학교폭력 심의 사안 중에서 초등학교 사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15.3%, 2021년 24.7%, 2022년 24.8%로 증가 추세에 있음. 이는 초등학교의 경우 작은 갈등도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지고,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이 학부모 간의 갈등 심화로 심의 요청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그러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인지 발달 단계상 사안처리 과정에서 갖게 되는 심리적인 상처 등의 이유로 초등 고학년 및 중고등학생들과 동일한 사안처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음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라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는 피·가해학생 분리 제도는 피해학생에 대한 적극적 보호라는 긍정적 효과는 있지만, 피해학생의 신고 접수만으로 가해 관련 학생이 교실에서 분리되고 분리 자체로 가해학생으로 낙인되는 효과와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로 사안 발생 초기 피·가해 학생 양측간의 갈등을 심화시켜 화해와 관계회복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초등학교 사안이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 사안 발생 초기 적극적인 개입으로 관계회복이 이루어진다면 피·가해학생은 학교생활에 안전하게 복귀가 이루어지고,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임

◯ 경기교육 소통 토론회 결과(2022.10.25.) 분석

2022.10.25.에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적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경기교육 제 3회 소통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서는 사안처리의 중심에 학생의 치유와 성장이라는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 주를 이루었다.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상대 학생 및 보호자 입장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며, 사안을 처리할 때에도 대립과 처벌보다 학생의 치유와 성장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인식이 교육공동체 내에 자리잡아야 함

- 사소한 갈등과 다툼, 초등학교 저학년 사안의 경우에는 사안처리 절차의 개선이 필요함

- 응보적 처벌보다는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모두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며, 학생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과 힘을 길러줄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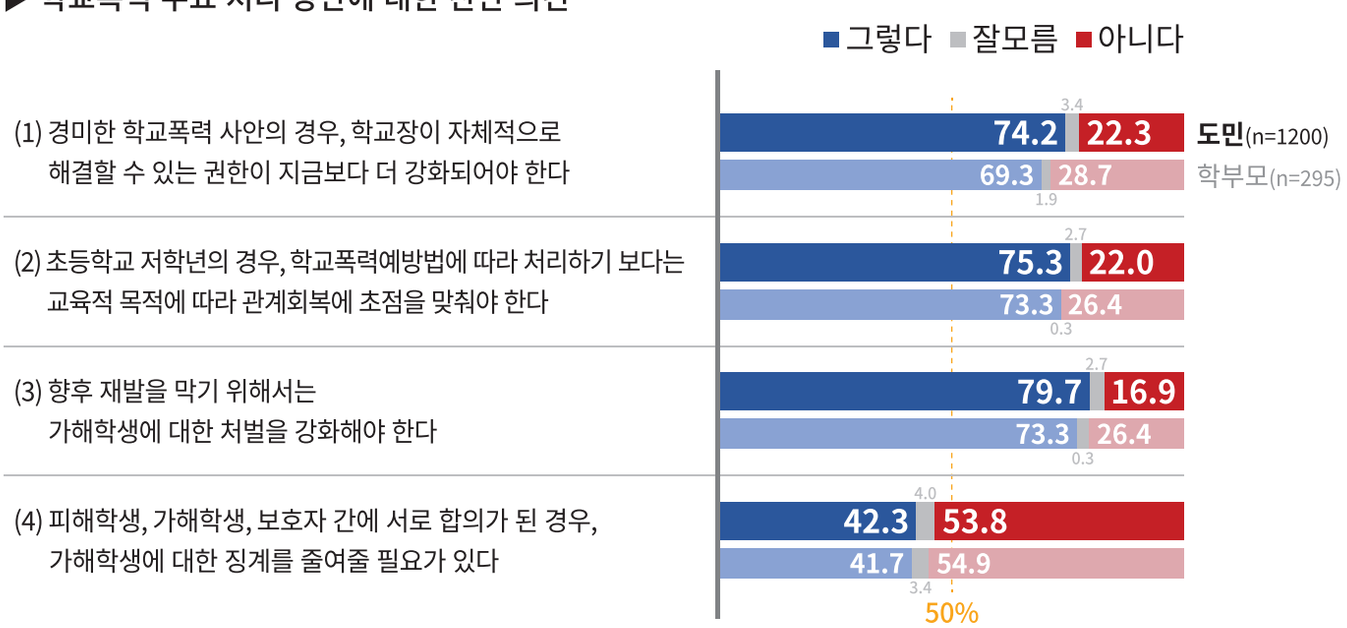
- 교원, 학교, 교육(지원)청의 교육적 해결 노력에 대한 학생과 보호자의 신뢰가 필요함

- 학교 교원의 교육적 해결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며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갈등조정 역량이 강화되어야 함

○ 5차 전화 여론조사 결과(10.15.~10.18.) 분석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22.10.15.~18.에 걸쳐 경기도민 약 12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여론조사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를 해야 함과 동시에 피·가해학생 간 관계회복과 갈등조정을 통한 교육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학교폭력 주요 처리 방안에 대한 찬반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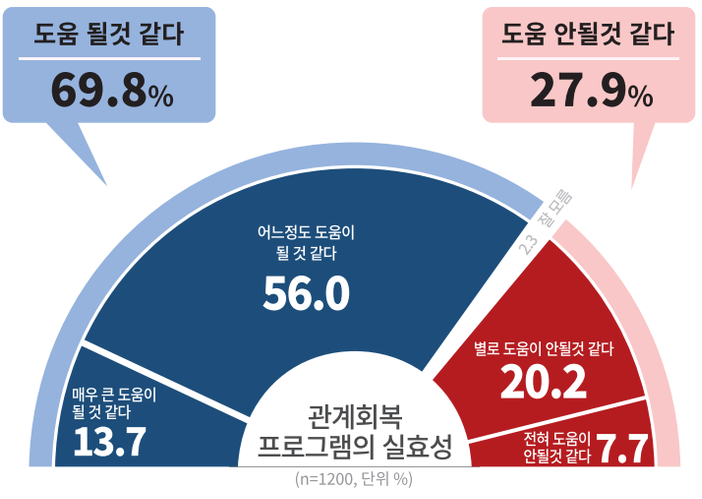
- 사안의 경중 및 가해학생의 연령(초등 저학년)에 따른 사안처리상의 융통성이 필요함(약 74%)

-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예외 없는 처벌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함(53.8%가 조건부 징계 완화에 반대)

-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해결제 강화에 찬성(74.2%)

- 초등 저학년의 경우, 법적 처리 보다는 관계회복 중심 처리방향에 찬성(7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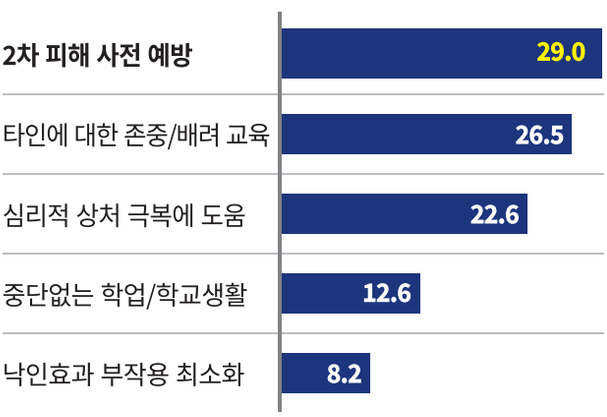
▶ 학교폭력 갈등조정과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실효성 및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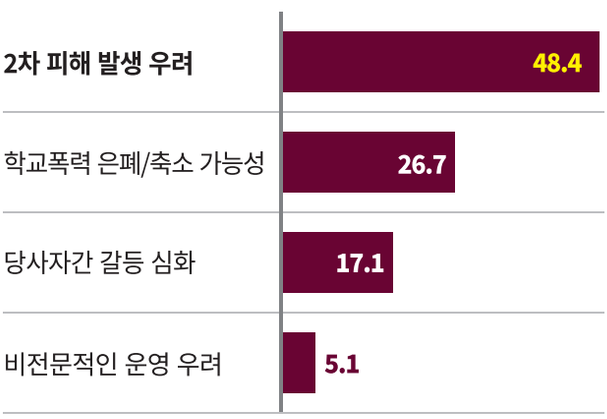
- 경기도민 10명 중 7명(69.8%), “학교폭력 갈등조정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응답함
- 학교폭력 갈등조정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확대에 대해 기대와 우려 사항 모두에서 1순위 고려 사항으로 “2차 피해”를 꼽음

※ 교육적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배려와 노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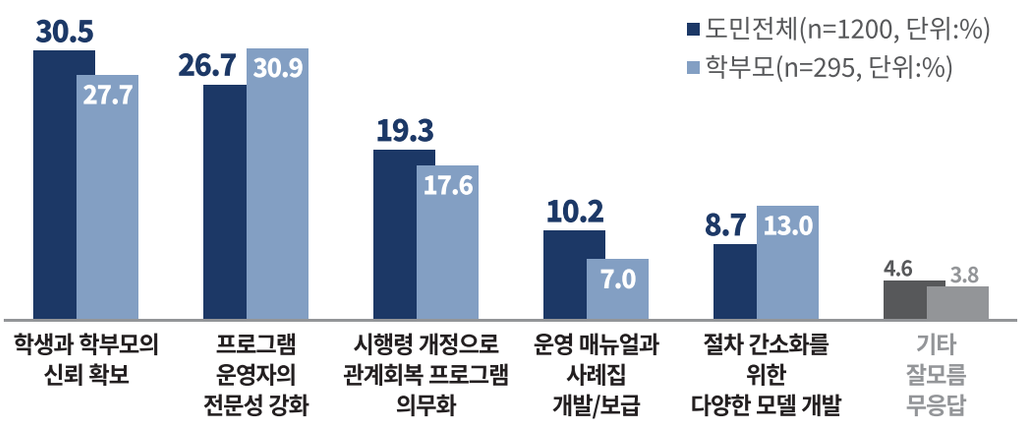
기대하고 있는 측면 (n=837, 단위: %)



기대가 낮은 이유 / 부족한 부분 (n=335, 단위: %)



▶ 학교폭력 관계회복 및 갈등조정 활성화 방안



- 학교폭력 사안의 해결에 있어서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갈등조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 확보'(30.5%)와 '전문성 강화'(26.7%)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함

4.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대응 체계 및 정책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의 정의
학교폭력 사안을 통해 학생이 배움을 얻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고, 관련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적 안정을 도와 피해 회복 및 책임 이행으로 나가도록 하며,회 복과 성장에 대한 바람을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활성화 방안 연구, 2021,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육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만,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 보호와 치유, 절차에 따른 엄정한 사안 처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

◯ 피해학생 보호 강화와 절차에 따른 철저한 사안 처리

- 학교폭력 발생 시 철저한 사안 조사와 절차에 따른 엄정한 사안 처리
  •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은 경찰 등 유관 기관 협력하여 엄정 대처
  • 가해학생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강화

-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와 심리 상태 파악으로 필요한 보호조치 시행
  → 피해학생에게는 학교장 긴급조치, 상처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가해학생과의 동선 분리 및 2차 피해 방지 등을 통해 보호 강화

- 공정하고 신속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
  • 사안처리 및 심의위원회 운영 법률 지원 확대(화해중재 지원 변호사 배치)
  • 심의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확대 및 심의위원 전문성 강화
  • 심의 업무 개선 위한 행·재정적 지원(인력 확충, 속기 용역, 온라인 사안처리 지원 시스템 등)

◯ 화해와 관계회복을 위한 자료 개발 보급 및 연수

-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적 해결 관련 자료 개발·보급을 통한 지원 및 홍보
  • 「별별」: 대상별, 사례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동영상, 지도안)
  • 「마음을 잇다, 평화가 있다」: 경기형 관계회복 프로그램(워크북, 동영상)
  • 「온마음」: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우수 사례집 →우수 사례 공유
  • 「내 마음의 매듭 풀기」: 가해학생 대상 특별교육 프로그램(워크북, 지도안)

- 관계회복 프로그램 및 갈등조정 지원
  • 교육지원청별 갈등조정자문단을 운영하여 2021년 253교 550건 지원함
  • 교육지원청 관계회복 교원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단위학교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382교 640건 지원함
  • 외부전문기관으로 위탁 지정하여 2021년 학교폭력 관련 상담 165회, 위기 개입 307회 등을 통해 단위학교 차원의 화해·분쟁조정을 지원함
  • 신속하고 공정한 사안처리 지원을 위해 학교폭력예방 현장지원단 구성 운영

- 피•가해학생의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 강구
  •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관계회복 프로그램 및 갈등조정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신뢰 확보 (학교폭력 사안접수시 사안처리 절차 및 교육적 해결 과정 안내)
  • 경기형 학교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제작·보급(관계회복 프로그램 안내 등) 예정
-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자 및 화해·갈등조정 전문가의 전문성 신장
  • 관계회복 및 학교폭력 갈등조정 기본 과정과 교원전문가 연수(2021년 1,075명, 2022년 1,000명 이수)
  •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전문성 강화 연수

○ (추진 계획)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

- 교육지원청 화해중재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
  • 학생지원센터의 학교인권지원센터로의 개편과 ‘(가칭) 화해중재팀’ 설치•운영으로 학교 내 갈등 사안 조기 현장 개입 맞춤형 지원
  • 교육지원청 화해중재 지원 변호사 배치(시범 운영 후 확대 배치)

-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교육적 해결 관련 제도 개선
  • 초등 저학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개선 및 교육적 해결 방안 마련
  •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갈등조정 강화 관련 법령, 지침 개정 노력
  예)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학교장 자체해결 객관적 요건 충족)의 경우 피⊠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의무화하여 교육적 해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

※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변경된 제도 시행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예상으로 교원(학교)과 교육지원청을 위한 예산 및 정책적 지원 수반을 전제로 함

5. 법령 및 지침 개정 논의 사항

개정 필요 사항 또는 개정 방향	필요성 및 기대되는 점	우려되는 점
○ **(법률) - 제16조** **분리제도 관련 법률 개정**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학생과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학교장 긴급조치만으로도 충분하므로 피해 학생-가해자 분리 제도는 폐지 또는 학교 폭력 전담기구 또는 학교장이 분리가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하여 최종 결정 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 ※ 이 경우, 분리 조치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함(예를 들어 보복 행위, 성 사안, 2주 이상의 상해 진단서 제출, 집단 폭행 등)	- 가해와 피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신고 학생 측 의사만으로 분리하게 되는 불합리한 요소 해소 (무죄 추정의 원칙, 인권 문제 등) - 가해관련 학생 분리로 인한 낙인효과 방지 및 분리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과 압박감이 해소 분리에 따른 초기 갈등 심화 해소	-사안 접수 초기 피해 학생의 불안감 해소 미흡
○ **(법률) - 제18조, 13조의 2, 17조 등** **: 심의위원회 분쟁조정 관련 법률 개정** -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사항에 **손해배상 외의 학교폭력 관련 갈등조정 내용** 포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합의 결과를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시 반영** 가능 내용 포함 (예: 실질적인 조치 경감, 경미한 경우 조치 없음 결정,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미충족 사안의 자체해결 가능화 등)	-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이 규정되어 있으나 유명무실함 (분쟁조정 실적 거의 없음) → 심의위원회 분쟁조정에 대한 신뢰 확보로 갈등조정 참여 확대 가능	- 심의위원들의 분쟁조정 역량이 필요함 - 분쟁조정을 위한 사전 사안 검토 제도 및 시간 확보 필요 -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을 위한 심의와 분쟁 조정 심의의 이원화에 대한 체계 정립 필요
○ **(법률) - 제2조의2항 관련**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학생 사안 처리 절차 개선** - 초등학교 저학년은 인지, 발달 단계상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으며, 학생사이의 갈등으로 심화되는 경우가 많음. 특히 저학년 학생의 사안조사 및 심의위원회 참석 과정 자체가 학생에게 상처가 될 가 능성도 높음. 따라서 초등 학교 저학년은 사안처리에서 제외하는 대신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도하는 방향 또는 **'교우관계 회복기간'**을 거친 후에 피해자가 신고를 원할 경우에만 사안처리 절차 진행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	- 초등 저학년의 경우 인지/정서 발달단계상 심리적 상처가 트라우마로 이어질 가능성 큼 -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학교 폭력 피·가해자의 프레임이 씌워져 피해의식 고조와 가해 학생의 낙인효과가 있음 - 심의위원회 참석에 대한 저학년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고 보임 - 변호사들의 학교폭력 사안 개입을 줄일 수 있음	- 심의위원들의 분쟁조정 역량이 필요함 - 분쟁조정을 위한 사전 사안 검토 제도 및 시간 확보 필요 -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을 위한 심의와 분쟁 조정 심의의 이원화에 대한 체계 정립 필요

○ **(시행령) - 제14조의3** **관계회복 프로그램 의무화 관련 시행령 개정** -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학교장 자체해결 객관적 요건 충족)의 경우 피·가해 학생 및 보호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의무화**하여 교육적 해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	- 관계회복 프로그램 의무화를 도입하여 학교의 교육적 해결 노력 유도 필요 → 교육적 해결 및 학교장 자체 해결 확대 기대, 학교의 교육력 회복 기대	- 학교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지원청 차원에서의 지원 필요 - 단위학교 교원의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역량 강화 필요 - 장기적으로는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예산적 지원 노력이 필요
○ **(지침) - 가이드 북 51쪽**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갈등 조정 참여시 학교 학교폭력 사안 처리 연장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 -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 관련 학생 및 학부모 간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나 갈등조정 참여시 학교의 사안처리 기한인 2+1주에 더해 내부 결재를 통해 추가로 연장 가능한 방향으로 지침 개정	-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이 규정되어 있으나 유명무실함 (분쟁조정 실적 거의 없음) → 심의위원회 분쟁조정에 대한 신뢰 확보로 갈등조정 참여 확대 가능	- 심의위원들의 분쟁조정 역량이 필요함 - 분쟁조정을 위한 사전 사안 검토 제도 및 시간 확보 필요 -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을 위한 심의와 분쟁 조정 심의의 이원화에 대한 체계 정립 필요

발제문 II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제안

경인교대 교육학과 박주형

Ⅰ. 서론

□ **코로나 이후 학교폭력의 양상이 변화되고 있음.**

-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양상과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변화하고 있음.

-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1차와 2022년 1차 실태조사의 결과 간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남. 전체적인 피해응답률과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에서는 약간의 차이만 나타났지만 피해유형에서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음. 언어폭력의 비중이 늘고, 신체폭력의 비중이 늘어난 것이 특징임. 신체폭력의 증가는 코로나 이후 학교가 정상화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2019년 1차 조사결과	2022년 1차 조사결과
•전체 피해응답률은 1.6% •학교 급별로 초 3.6%, 중 0.8%, 고 0.4%로 조사 •피해유형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언어폭력(35.6%), 집단따돌림(23.2%), 사이버 괴롭힘(8.9%) 등의 순	•전체 피해응답률은 1.7% •학교 급별로 초 3.8%, 중 0.9%, 고 0.3%로 조사 •피해유형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언어폭력(41.8%), 신체폭력(14.6%), 집단따돌림(13.3%) 등의 순

- 학교폭력과 관련된 수치는 크게 변한 것이 없지만 학교현장의 의견에 따르면 학교폭력 양상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한유경 외(2021)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를 거치면서 학생들의 정서적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스트레스가 커짐에 따라 학교폭력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커졌으며,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이슈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밝혔음.

- 최근 국회에서도 사이버 폭력 관련 입법제안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학생들 사이에서는 사이버 폭력과 언어폭력, 따돌림 등이 혼재되어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 강득구 의원실에서 발표한 가해·피해학생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만3천673건, 2017년 3만1천240건, 2018년 3만2천632건, 2019년 3만1천130건, 2020년 8천357건이었음. 2020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등교수업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원인임.

-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가해 학생의 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 등 중징계

- 비율은 2016년 26.4%, 2017년 25.0%, 2018년 26.0%, 2019년 27.9%, 2020년 37.1%로 거의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강득구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학기에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현황 자료에서 학교폭력 전체 발생건(2만4785건) 중 학교장 자체해결 건수는 1만1576건으로 46.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건수는 13,209건으로 53.3%를 차지하였음.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 비율(54.6%)이 자치위원회 심의율(45.4%) 보다 더 높은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자치위원회 심의율이 학교장 자체해결 비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교폭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매년 이루어지고 있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간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 2019년 법률 개정을 통해 현장에 도입된 학교장 자체해결제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학교폭력 사항을 심의하는 권한을 넘긴 것에 대해 학교현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현장에 안착되어가고 있음(한유경 외, 2021).

- 다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변화한 학생들의 행동패턴, 학교폭력 양상 그리고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접근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본 원고를 통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완전한 답을 제시하기 보다는 학교폭력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들의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함.

Ⅱ. 그간의 입법 논의

□ 법률 개정 연혁

-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20여번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중 타법개정에 따른 법률 개정을 제외하면 2008년 3월 14일의 전부개정과 11번의 일부개정 작업이 이루어졌음.
- 2004년의 법률 제정 이후 2008년의 전면개정을 통해 법률체계가 완성되었음. 2009년과 2011년에 두 번에 걸친 일부개정이 있은 후 2012년 2회, 2013, 2015, 2016년 각 1회, 2017년 2회, 2019년과 2020년에 1회씩 일부개정이 이루어졌음.
- 최근의 법률 개정사안 중에는 2019년 8월의 일부개정안이 학교폭력 대책 시스템의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음.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사항

○ 제20차 : [시행 2019. 9. 1.] [법률 제16441호, 2019. 8. 20., 일부개정]

- 학교 내에 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가·피해조치를 결정하도록 함.
-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신설하고 자체해결제 부의 여부를 학교 내 전담기구에서 심의하도록 함.
- 학교폭력조치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함.

조문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내용
제12조 1항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 (이하 “자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 교육지원청 (…)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하 “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 증가에 따라 담당 교원 및 학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
제13조 1항	자치위원회는 …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	심의위원회는 …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 (…)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 하여야 한다.	·학교의 자치위원회를 교육청의 심의위원회로 이관하면서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구성을 변경 ·학부모 비율 축소(1/2→1/3)
제13조의 2 (신설)	①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학교의 장이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경미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자체 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받아 자체 해결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됨.
제14조 제4항 (신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제17조의 2	학교의 장이 …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 지역 위원 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교육장이 … 내린 조치에 대하 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 른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학교폭력조치에 대한 재심기구 를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하 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 제21차 :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68호, 2020. 12. 22., 일부개정]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전문가의 의견청취
- 학교폭력 발생 시 피·가해학생 즉시 분리 조치 시행

조문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내용
제13조 4항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을 제로하기 위하여, 아동심리 전문가 또는 견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도록 함.
제13조의 2 제2항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 과정에 …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제16조 제1항	…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자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없이 가해자 (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동일학교 내 폭력, 집단 따올림, 성폭력과 같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조치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존의 경우 학교의 장이 즉시 조치 할 의무가 없었음.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 분리 조치를 하도록 의무 조항을 마련함.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의안 현황

가. 제21대 국회 (2020~2024년) 의안

○ 소관위 접수 및 심사

- 2022.11.30.일 기준으로 31건의 법률 의안이 제출된 상태임

순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 내용 요약
1	2022.11.30	이학영의원 등 11인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의 긴급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경우 교육감이 징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긴급보호를 위하여 학급교체, 전문의료기관 등의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함

순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 내용 요약
3	2022.4.7.	강득구의원 등 10인	학교폭력에 대한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지원 강화, 가해학생 조치 강화
4	2022.3.22.	김철민의원 등 10인	특정한 경우에 학교생활기록에서 그 조치를 받은 사항을 삭제 할 수 없도록 함
5	2022.1.5.	임호선의원 등 11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공개 개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 치료를 필수적으로 가해학생에게 부과,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 발생 시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리도록 함
6	2021.12.29.	김미애의원 등 15인	다문화학생이 관련된 사안인 경우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음
7	2021.12.28.	김미애의원 등 15인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처리에 있어 보조인을 선임 할 수 있게 함.
8	2021.12.13.	조경태의원 등 11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횟수 확대 (학기별 1회 이상에서 학기별 2회 이상으로)
9	2021.11.18.	서영석의원 등 12인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도 가해학생에게 금지되는 행위에 포함, 특별교육을 받는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이 포함, 가해학생 보호자의 노력 의무를 추가
10	2021.11.10.	이탄희의원 등 10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예방교육 등에 관한 지침 마련
11	2021.11.1.	권칠승의원 등 14인	학교폭력에서 '사이버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사이버폭력 예방센터를 설치·운영
12	2021.8.31.	정청래의원 등 11인	가해학생의 금지행위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를 구체화,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까지도 금지
13	2021.7.23.	최기상의원 등 19인	장애학생의 금지행위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를 구체화,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까지도 금지
14	2021.7.2.	윤준병의원 등 10인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시·도교육청에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 실태조사의 내용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에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사항이 포함
15	2021.6.22.	김예지의원 등 10인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응매뉴얼의 근거를 마련,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지정·운영
16	2021.5.11.	양정숙의원 등 11인	학교폭력 유형 중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구성, 전문기관 대 전담부서 설치·운영
17	2021.4.22.	임종성의원 등 11인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 신설,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설치·운영
18	2021.4.20.	이채익의원 등 10인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조치 포함

순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 내용 요약
19	2021.4.12.	권인숙의원 등 10인	학교폭력의 정의에 “음란·폭력 정보 요구 및 제공”을 포함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하는 기준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 하고, 피해학생 또는 학교의 다수학생에게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학교폭력을 행한 경우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병과하거나 가중 할 수 있도록 하며,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에 외부 위탁교육을 포함
20	2021.4.6.	박정의원 등 11인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도 가해학생에게 금지되는 행위에 포함,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에게는 사과, 전학, 퇴학 등 현행법에 따른 조치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조치를 받은 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
21	2021.4.6.	류호정의원 등 11인	
22	2021.3.30.	양정숙의원 등 11인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을 비롯하여 다른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하거나 과거 학교폭력으로 인해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
23	2021.3.12.	배준영의원 등 40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 하도록 명시하고, 피해학생이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당하는 경우에 학교 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해당 가해학생에 대하여 전학 조치를 하도록 함
24	2021.3.11.	임오경의원 등 12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시켜 금지하고자 함
25	2021.2.24.	정청래의원 등 10인	각 교육청 관할 내 학교 운동선수들에 대한 폭력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스포츠윤리센터로 신고하도록 함
26	2021.2.3.	강민정의원 등 11인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삭생으로 하여금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및 장애 인식 개선에 관한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27	2020.12.18.	김정재의원 등 10인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의견이 반영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을 연구·개발 및 보급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28	2020.8.31.	송옥주의원 등 10인	학교폭력에 대하여는 미인가 대안학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상담 과정 및 내용에 대하여도 비밀로서 누설되지 않도록 함
29	2020.8.21.	조승래의원 등 11인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변경, 학교장은 학교폭력사건의 자체해결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0	2020.8.12.	임이자의원 등 10인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 사업자에게 배포하고 이를 송출하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도록 함,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상담치유센터 설립의무를 부과하고, 학교폭력상담 치유센터의 사업 및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즉시 학교폭력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1	2020.6.30.	강기윤의원 등 10인	따돌림 등의 정의규정을 수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진행상황을 피해자가 잘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

나. 제20대 국회 (2016~2020년) 의안

○ 임기만료 폐기

순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 내용 요약
1	2019.12.2	홍문표의원 등 10인	학교폭력 중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심의위원회 구성,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 운영)
2	2019.6.27.	전혜숙의원 등 14인	미인가 대안학교도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상담 과정 및 내용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3	2019.4.17.	오영훈의원 등 15인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도 가해학생에게 금지되는 행위에 포함, 사이버괴롭힘 등을 통해 피해학생에 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 금액의 환불조치를 추가
4	2019.4.10.	홍문표의원 등 10인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위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 그 심의에서 제척·기피신청
5	2019.3.7.	조승래의원 등 10인	학교장 자체해결제 도입,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문을 신설, 재심을 일원화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재심위원회를 설치
6	2018.8.29.	전희경의원 등 10인	재심가관과 절차를 일원화
7	2018.8.7.	유은혜의원 등 11인	둘 이상의 학교 학생이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 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재심기구를 일원화
8	2018.4.3.	강훈식의원 등 12인	장애학생이 피·가해자인 경우 장애인 교육전문가의 의견청취
9	2018.1.24.	안민석의원 등 11인	고의적 축소 및 은폐에 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축소 및 은폐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정도 등에 따라 가중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10	2017.12.19.	송기석의원 등 11인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함
11	2017.11.27.	김기선의원 등 10인	재심기관과 절차를 일원화
12	2017.11.24.	염동열의원 등 13인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전학하도록 배정된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해학생의 전학을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가해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13	2017.11.22.	노웅래의원 등 12인	자치위원회에서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과 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목격자 진술서를 포함하여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14	2017.9.29.	김삼화의원 등 10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 보호체계 등을 참고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순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 내용 요약
15	2017.9.29.	홍의락의원 등 10인	전담기구 및 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학교 밖의 기초·광역지자체에 각각 설치된 기초위원회(1심 기능)와 광역위원회(재심 기능)의 2단계 심의·의결 제도를 명료하게 재구축
16	2017.9.14.	이정미의원 등 10인	학교폭력 은폐·축소 교원을 가볍게 징계하거나 징계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교육감이 시정 또는 변경 명령, 해당 학교의 정원 감춤 및 학급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17	2017.9.11.	백혜련의원 등 10인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아니한 경우를 재심청구사유에 추가하여 재심청구사유를 명확하게 함
18	2017.8.2.	박광온의원 등 10인	학교장에게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록·보존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19	2017.7.20.	김철민의원 등 11인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학교의 장 또는 교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0	2017.3.20.	서영교의원 등 16인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규범력을 높임
21	2016.12.13.	박남춘의원 등 12인	따돌림 등의 정의규정을 수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진행상황을 피해자가 잘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
22	2016.11.2.	소병훈의원 등 10인	다문화학생이 관련된 사안인 경우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음

III. 몇 가지 문제제기

□ **교육적 해결의 의미는?**

- 교육적 해결이라는 말이 학교폭력 제도개선 과정에서 빈번히 쓰이고 있음. 2012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포함한 강력한 학교폭력 대책을 담은 2.6 대책 이후에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학교의 재량권을 높이고 처벌보다는 화해와 중재 그리고 관계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대변한다고 생각함.
-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한 조치들을 처벌 위주의 학교폭력 대책으로 인식해야 하나라는 의문이 있긴 하지만 '교육과 학생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에서 '무조건 법(규정)대로 해'라는 주장이 난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함.
- 교육적 해결의 대표적인 사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식을 완화하는 것,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장 자체해결제 도입임. 이외에 학생들간의 관계회복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어울림 등)을 학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함.
- 교육적 해결은 학교가 교육과정이나 학교생활 프로그램 그리고 교원들과 교육공동체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의 노력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함.
- 물론 학교규칙을 어기면 학생징계를 할 수 있고,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가해학생 조치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러한 규칙을 학생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하며, 지키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학습시키는 것도 중요함.

- 하지만, 미성년자들이 사회인이 되기 전 여러 가지 측면을 학습하는 기관인 학교에서 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그간의 법률 개정에 대한 요구가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 대한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앞으로는 교육적 해결방안을 법률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를 다루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 학교장 자체해결제

- 학교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해결 조치의 하나로 일컬어지는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까지 가지 않고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 지역별, 시기별, 학교급별로 다르지만 대략 40~60% 수준의 학교폭력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의 부담(사안처리 건수)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

- 하지만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한번의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당사자간의 동의에 의해 해결'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는 판단이 듦. 개인적으로 마치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한번은 봐주고 시작하자라는 인식이 듦. 좋은 의미로는 화해와 갈등조정의 결과로 볼 수 있지만 미봉책으로 한번은 덮고 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음. 이는 학교장 자체해결제에 결부되는 교육적 관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 심의위원회 제도의 문제점

- 심의위원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학교폭력 사안처리 기간이 늘어났음. 기존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시절에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는'신고 접수 등 사건 인지 후 14일 이내에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7일 이내에서 자치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로 규정된 반면 심의위원회 심의기간은 '심의위원회는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다'로 규정되어 있음.

- 학교단위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28일 이내 심의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교육지원청별 규모와 사안처리 건수가 다르고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전반적으로 심의위원회별 처리건수와 건당 처리 기간이 증가하고 있음.

- 심의위원회 신설로 인해 피·가해학생 조치결정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사안간 결정의 형평성이 높아졌으며, 학교의 결정에 대한 부담을 줄여줬다는 평가(한유경 외, 2021)를 받고 있는 반면 사안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사안처리에 관한 정보가

- 학교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안처리를 담당하는 책임교사나 담임교사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평가도 있음.

- 특히, 학교폭력 신고 이후 피·가해학생의 분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피해학생 학부모로부터 일정기간(3일 내외)이 아니라 심의위원회 결정 전까지 분리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아지고 있음.

- 또한 피·가해학생 학부모들은 담임교사에게 사안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담임교사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임.

□ **학교에 대한 지원 부족**

- 2004년 법률 제정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법률 개정을 보면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부담만을 늘려왔지 이를 감당할 학교의 역량을 강화시키거나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을 하는데 부족했다고 판단됨.

- 학교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의 학습적인 성장을 책임져야 하는 곳으로 항시적으로 해야 하는 과업을 가지고 있음. 이외에 최근 10여년간의 흐름을 보면 학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이를 학교가 담아내길 원하고 있는 상황임.

- 학교폭력의 관점에서 보면 학교는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의 심리정서적 평안함과 온전한 학습을 위해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에 전념해야 하는 기관처럼 보이지만 이 외에 엄청난 시대적 요구를 담아내는 노력을 하고 있음.

- 교원은 AI·디지털·SW 전문가가 되어야 하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적응해야 함. 학생의 교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본인의 전공 과목 이외에 다른 과목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며, 교과 간 융합을 위해 새로운 역량을 갖춘 교사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받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교원양성과정이나 현직교사의 연수과정을 통해 모든 교원이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문가가 되길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학생의 심리정서적 측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역량을 길러주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은 교원의 책무이지만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그 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교원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지원해주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듦.

IV.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강화하기 위한 제안

□ **교육부의 그간의 노력**

- 교육부는 ’05년부터 매 5년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관계부처 합동, 2021).

- 현재는 2020년 1월에 수립된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4)'에 근거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교과연계 강화, 학교장 자체해결제 및 관계회복 활성화 등 학교의 교육적 역할 강화, 피해학생 지원기관 확대·내실화, 가해학생 특별교육 내실화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펴나가고 있음.
- 2021.12월에 발표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에 따라 (감지) 폭력 피해 위기 학생 조기 발견 강화, (보호) 피해학생 중심 보호체계 내실화, (조치) 가해자 조치 및 대응 강화, (예방) 사전 예방활동 다양·활성화, (협력) 전 사회적 대응 협력체계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학교폭력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기존의 학교폭력 제도의 기반을 강화하고 세부적인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고 평가됨.
- 개인적으로 교육부의 학교폭력 정책의 흐름을 평가할 때 기존의 처벌 위주의 학교폭력 대책 예컨대, 사안처리과정 중심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가 학교폭력 당사자들간의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해결 노력을 높여 학교폭력 당사자들간의 중재와 화해 및 관계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함.
- 다만 이 과정에서 대중적인 관심을 받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보다 강화된 정책(예: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큰 흐름은 변화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음.

□ 의안에서 제시된 교육적 해결을 위한 방안

- 앞에서 살펴본 21대와 20대에 발의된 법률안에서 교육적 해결과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2022. 4.7.	강득구의원 등10인	학교폭력에 대한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제11조 (교육감의 임무) ⑫ 교육감은 학교의 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폭력 처리와 관련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업무 담당자 지원 강화	제11조4 (학교폭력업무 담당자의 지원) ① 학교의 장은 학교 폭력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이하 "책임교사" 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1. 12.13.	조경태의원 등10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횟수 확대	제15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제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 (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을 학기별로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020. 12.18.	김정재의원 등10인	학생의 의견이 반영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을 연구·개발 및 보급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각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을 연구·개발 및 보급하여야 한다.
2020. 8.21.	조승래의원 등11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지원	제13조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③ 학교의 장은 제 1항에 따른 사건 해결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20. 8.21.	조승래의원 등11인	책임교사의 업무 경감	제14조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책임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21. 12.13.	조경태의원 등10인	목적에서 관계회복 포함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교육·선도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회복과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업무 담당교사의 수업부담 경감	제11조 (교육감의 의무) ⑫ 교육감은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의 수업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문을 신설	제18조의 2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운영)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교육적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학교 내·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회복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학교장 자체해결제와 결부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의 의무 실시**

- 의안에서 제시된 제안을 보다 강화해서 제시한다면 관계 회복 프로그램의 의무 실시가 가능함. 이 과정에서 학교밖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할 수 있음.

-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도입되었을 때 시행령 수준에서 학교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조치로서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었음. 즉, 시행령 제14조의3(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에서 '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학생 ·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이러한 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자료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는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실제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어울림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학교폭력 교육 프로그램들은 예방적 기능이 강하며, 학교폭력을 갈등의 관점으로 보거나 학교폭력 당사자들과 주변인들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다 함께 해소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음.

-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도입할 시 의무적으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법률 규정을 신설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수준에서 관계 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구성원칙이나 시행주체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면서 학교에서의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이 줄어든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학부모가 포함된 전담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담기구가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면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임.

- 교육의 관점에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은 실수와 실패 그리고 아픔을 반성하고 성찰함으로써 사회정서적 역량을 기를 수 있으며 차후에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임.

□ 갈등조정 활동 강화를 위한 심의위원회 건수 축소

- 현실적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건수가 축소되어야지 현재의 학교폭력 제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학폭 상황에서 갈등을 조정해줄 절차를 강화해야 함.

-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선결요건은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또한 기본적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함.

- 이 과정에서의 핵심은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측간의 합의로 볼 수 있는데 학교폭력으로 인한 당사자들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합의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임.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해·갈등조정자문단'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법률상 교육감이나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이 있는 경우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이 분쟁조정의 대상임.

- 하지만 분쟁조정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활발히 시행되고 있지 않음. 심의위원회에 대한 학교폭력 당사자들에 대한 관심은 가해학생 조치에 있기 때문임.

- 화해·갈등조정은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초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학교관계자 이외에 다양한 전문가 및 학교공동체 구성원(예: 의사, 변호사, 학부모 등)로 구성된 화해·갈등조정자문단이 학교의 요청 하에 학교폭력 사안의 당사자들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함. 더 나아가서는 화해·갈등조정자문단은 교육지원청 조직 내로 포함될 수도 있으며 학교폭력으로 인한 갈등뿐만 아니라 학교 내 다양한 측면에서의 갈등조정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갈등조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신설된다면 활발한 갈등조정을 통해 심의위원회 심의건수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음. 이를 통해 정말 필요한 학교폭력 사안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음.

□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대한 적극적 지원: 생활지도 수석교사제 도입

- '학생들에게 처벌 보다 관계 개선 방법과 역량을 가르쳐야 한다', '교직원 연수, 경험 축적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학교폭력, 보다 포괄적으로는 학교 내 생활지도를 책임있게 담당하고 이에 관련된 학교내 활동 등을 이끄는 존재가 필요함.

- 학교에서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가장 기피업무임. 그래서 매년 바뀌게 되며 이로 인해 학교폭력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없는 상황임. 앞서 논의한 의안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보면 이를 고려해서 책임교사에 대한 업무경감을 법률로 규정하자는 제안들이 많았음.

- 이를 현재의 인사제도 상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활지도 수석교사제를 제안함. 「초·중등교육법」제19조(교직원의 구분)에 따르면 학교에 수석교사를 둘 수 있고, 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는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 · 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또한 제21조(교원의 자격)에는 교수 · 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음.

- 수석교사가 도입된 2012년과 현재의 2022년을 비교하면 생활지도 영역이 교사의 직무영역으로 더욱 밀접하게 다가와있음. 비단 학교폭력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적 상황들이 학교의 생활지도 역량 강화를 필요로 함. 또한 학생들 역시 학교생활을 통해 사회성이나 공존의 역량을 같이 학습할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생활지도 영역에서 수석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학교폭력 상황과 관련하여 책임교사의 부담이 과중한 학교나 학교급에 우선적으로 생활지도 수석교사를 배치할 수 있을 것임.

□ 학교가 아닌 ‘교육’적 해결 추진

-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뿐만 아니라 전 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었음. 이는 학교폭력 대책을 교육부가 아니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드는 이유임. 또한 대책의 내용으로 가정의 역할과 여러 사회적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임.

- 최근 학교폭력예방법을 둘러싼 가장 큰 관심은 사이버폭력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임. 앞서 살펴본 법률 의안들에서도 사이버따돌림을 넘어서 사이버폭력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표출되고 있음.

- 학교현장 특히 학생들의 삶 속에서 사이버 혹은 디지털 세상은 그들의 실제 삶을 지배하고 있음. 학교에서 수업이 디지털화될수록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지털 위험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 디지털 중독이 교실에서의 도박으로 이루어지고 학생들간의 관계를 훼손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을 학교의 노력으로, 교사의 역량만을 향상시켜 해결하려는 시도로는 그복할 수 없음.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이나 디지털 관련 민간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학교교육과정 및 교육의 방법 변화를 통해 교원의 더 나아가서 학생의 디지털 시민성을 향상할 수 있음. 벌써 많은 민간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 혹은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의 일환으로 학교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 협력이 학교의 노력과 결합된다면 학생들이 겪는 디지털 위험 혹은 사이버폭력의 문제해소에 한걸을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됨.

□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에 대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배제 규정 신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 이 법은 학생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로 인해 학폭법상 가해학생 조치는 학생의 소년법이나 형법에 의한 처벌과 별도로 이루어져도 이중처벌이 아니게 됨.

- 현행 학폭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의 발달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제도하에 학교폭력을 다루고 있음. 일반적으로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만10세~14세 미만에 해당되지 않는 초등학교 1~3학년(범법소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초등학생 저학년의 발달단계를 고려할 때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이나 학생들간에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의 개념과 범주는 다른 학년과는 매우 다른 양상임(오인수 외, 2016).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을 힘의 불균형,

- 또한 학교현장에서 많은 교사들이 인식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학교폭력을 둘러싼 학부모들간의 갈등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음. 그리고 대다수 학부모 역시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교폭력을 기존의 사안처리 과정에서 다른 학년의 학교폭력 문제와 동일하게 다루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법률 상 적용 대상에서 특정한 집단을 배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임. 또한 일방적으로 현재의 시스템 내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학폭법 적용 배제 혹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을 배제한다고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측될 수 있음.

- 이러한 다양한 점을 고려하면서 단순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외가 아닌 다양한 교육적 활동과 결합된 형태의 새로운 제도가 고민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됨.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2021).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

오인수, 이승연, 김화영, 김혜미(2016).
근거이론에 기반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폭력 특징에 대한 교사의 인식 탐색 연구.
교육과학연구, 제47권 제3호. 73-93면.

장혜진(20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에 대한 소고. 입법과 정책, 제10권 제2호. 359-378면.

한유경, 박주형, 송애리(2021).
코로나 19 이후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자유토론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 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정복,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병욱** | 주관 **경기도교육청**